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예산규모

□ 총 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3회 추경	2회 추경	증 감	%	비 고
계		1,309,200	1,257,800	51,400	4.09	
일 반 회 계		1,066,700	1,026,900	39,800	3.88	
특 별 회 계		242,500	230,900	11,600	5.02	
기 타 특 별		59,600	59,800	△200	△0.33	
농 공 단 지 조 성 사 업		625	625			
도 시 교 통 사 업		8,036	8,123	△87	△1.07	
의 료 급 여 기 금		2,907	3,020	△113	△3.74	
저소득주민주거안정및 생 활 안 정 기 금		1,320	1,320			
폐기물처리시설업		12,668	12,668			
수 질 개 선 사 업		8,460	8,460			
치 수 사 업		3,563	3,563			
도 시 개 발		13,570	13,57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 지 보 상		537	537			
기 반 시 설 사 업		33	33			
공 업 용 지 조 성		4,105	4,105			
주 택 사 업		3,776	3,776			
상 하 수 도 특 별		182,900	171,100	11,800	6.90	
상 수 도(공기업)		60,900	59,500	1,400	2.35	
하 수 도(공기업)		122,000	111,600	10,400	9.32	

2. 회계별 세입 · 세출내역

□ 일반회계

○ 세 입

(단위 : 백만원)

세 입		3회 추경	구성비 (%)	2회 추경	증 감	비율 (%)	비 고
총 계		1,066,700	100	1,026,900	39,800	3.88	
지방세수입		436,264	40.90	405,000	31,264	7.72	
	주 민 세	27,886	2.61	25,900	1,986	7.67	
	재 산 세	61,557	5.77	55,800	5,757	10.32	
	자 동 차 세	51,103	4.79	51,103			
	담배소비세	29,001	2.72	33,100	△4,099	△12.38	
	지방소득세	266,717	25.00	234,597	32,120	13.69	
	지난연도 수입	0	0	4,500	△4,500	순감	
세외수입		43,829	4.11	43,380	449	1.04	
	경상적세외수입	32,061	3.01	31,912	149	0.47	
	임시적세외수입	11,768	1.10	11,468	300	2.62	
지방교부세		66,036	6.19	63,986	2,050	3.20	
조정교부금		49,822	4.67	50,140	△318	△0.63	
보 조 금		364,890	34.21	361,148	3,742	1.04	
	국고보조금 등	271,298	25.43	270,398	900	0.33	
	시·도비 보조금	93,592	8.77	90,750	2,842	3.13	
지방채 차입		26,600	2.49	24,000	2,600	10.83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79,259	7.43	79,246	13	0.02	

※ 재정자립도 : 45.0%(2회추경 43.7%)

○ 세 출

【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3회 추경	비율(%)	2회 추경	증 감	비율(%)	비 고
계	1,066,700	100	1,026,900	39,800	3.88	
일 반 공 공 행 정	50,735	4.76	52,255	△ 1,520	△ 2.91	
공공질서및안전	8,421	0.79	7,957	464	5.83	
문 화 및 관 광	83,371	7.82	80,345	3,026	3.77	
환 경 보 호	99,077	9.29	100,188	△ 1,111	△ 1.11	
사 회 복 지	318,386	29.85	308,386	10,000	3.24	
보 건	20,732	1.94	20,657	75	0.37	
농 립 해 양 수 산	115,877	10.86	107,139	8,738	8.16	
산업 · 중소기업	36,885	3.46	34,486	2,399	6.96	
수 송 및 교 통	118,962	11.15	101,700	17,262	16.97	
국토및지역개발	50,791	4.76	47,342	3,449	7.29	
예 비 비 및 기 타	163,463	15.32	166,445	△ 2,982	△ 1.79	

【성질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3회 추경	비율(%)	2회 추경	증 감	비율(%)	비 고
계	1,066,700	100	1,026,900	39,800	3.88	
인 건 비	125,242	11.74	126,360	△ 1,118	△ 0.88	
물 건 비	60,585	5.68	63,179	△ 2,594	△ 4.11	
경 상 이 전	503,818	47.23	490,529	13,289	2.71	
자 본 지 출	318,901	29.90	296,823	22,078	7.44	
보 전 재 원	17,480	1.64	17,480			
내 부 거 래	19,716	1.85	18,166	1,550	8.53	
예비비 및 기타	20,958	1.96	14,363	6,595	45.92	

□ 특별회계

○ 도시교통사업

(단위 : 백만원)

세입	3회 추경	2회 추경	비고 (증감)	세출	3회 추경	2회 추경	비고 (증감)
계	8,036	8,123	△87	계	8,036	8,123	△87
사용료수입	1,826	1,826		인건비	212	218	△6
이자수입	10	27	△17	물건비	1,377	1,446	△69
부담금	605	605		경상이전	3,291	3,295	△4
과징금및과태료	1,540	1,545	△5	시설비및부대비	2,916	2,970	△54
지난연도수입	439	504	△65	민간자본이전	122	127	△5
도비보조금	41	41		예비비	118	67	51
순세계잉여금	543	543					
기타회계전입금	3,032	3,032					

○ 의료급여기금

(단위 : 백만원)

세입	3회 추경	2회 추경	비고 (증감)	세출	3회 추경	2회 추경	비고 (증감)
계	2,907	3,020	△113	계	2,907	3,020	△113
이자수입	4	4		인건비	123	109	14
기타수입	24	24		물건비	49	49	
국고보조금	482	470	12	경상이전	2,487	2,487	
도비보조금	120	118	2	예비비	13	140	△127
보전수입등	221	348	△127	반환금기타	235	235	
기타회계전입금	2,056	2,056					

○ 저소득주민주거안정및생활안정기금

(단위 : 백만원)

세 입	3회 추경	2회 추경	비 고 (증감)	세 출	3회 추경	2회 추경	비 고 (증감)
계	1,320	1,320		계	1,320	1,320	
이 자 수 입	11	11		일 반 운 영 비	4	4	
지 난 연 도 수 입	15	15		여 비	3	3	
순 세 계 잉 여 금	1,162	1,162		용 자 금	235	268	△33
용자금원금수입	132	132		예 비 비	1,078	1,045	33

○ 치수사업

(단위 : 백만원)

세 입	3회 추경	2회 추경	비 고 (증감)	세 출	3회 추경	2회 추경	비 고 (증감)
계	3,563	3,563		계	3,563	3,563	
사 용 료 수 입	150	150		인 건 비	277	266	11
징수교부금수입	116	116		일 반 운 영 비	114	114	
기 타 수 입	1	1		여 비	11	11	
도 비 보 조 금	43	43		연금부담금등	31	31	
순 세 계 잉 여 금	3,253	3,253		시설비및부대비	450	450	
				예비비 및 기타	2,680	2,691	△11

○ 도시개발

(단위 : 백만원)

세 입	3회 추경	2회 추경	비 고 (증감)	세 출	3회 추경	2회 추경	비 고 (증감)
계	13,570	13,570		계	13,570	13,570	
사 업 수 입	150	150		일 반 운 영 비	8	29	△21
이 자 수 입	29	29		여 비	6	6	
기 타 수 입	3	3		시설비및부대비	2,285	8,959	△6,674
순 세 계 잉 여 금	13,388	13,388		예 비 비	11,271	4,576	6,695

○ 상수도사업

(단위 : 백만원)

세 입	3회 추경	2회 추경	비 고 (증 감)	세 출	3회 추경	2회 추경	비 고 (증 감)
계	60,900	59,500	1,400	계	60,900	59,500	1,400
사 업 수 익	53,747	53,745	2	인 건 비	5,477	5,648	△171
이 월 , 미 수 금	4,785	4,752	33	경 상 경 비	46,372	46,531	△159
자 본 적 수 입	2,368	1,003	1,365	자 본 지 출	7,048	6,016	1,032
				예 비 비 기 타	2,003	1,305	698

○ 하수도사업

(단위 : 백만원)

세 입	3회 추경	2회 추경	비 고 (증 감)	세 출	3회 추경	2회 추경	비 고 (증 감)
계	122,000	111,600	10,400	계	122,000	111,600	10,400
사 업 수 익	49,060	48,681	379	인 건 비	1,315	1,387	△72
이 월 , 미 수 금	29,173	29,140	33	경 상 경 비	40,904	43,769	△2,865
자 본 적 수 입	43,767	33,779	9,988	자 본 지 출	53,216	41,785	11,431
				예 비 비 기 타	26,565	24,659	1,906

3.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개발기금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변경)	수입액 (당초)	증 감	항 목	지출액 (변경)	지출액 (당초)	증 감
합 계	12,726	12,731	△5	합 계	12,726	12,731	△5
전입금				비용자성사업비			
보조금				용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용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2,720	12,725	△5	예치금	0	12,731	△12,731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6	6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12,726	0	12,726
				기타이자수입			

□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2차변경)	수입액 (1차변경)	증감	항 목	지출액 (2차변경)	지출액 (1차변경)	증 감
합 계	1,370,847	1,043,867	326,980	합 계	1,370,847	1,043,867	326,980
전입금	550,000	400,000	150,000	비용자성사업비	550,000	430,000	120,000
보조금				용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용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820,209	643,357	176,852	예치금	820,847	613,867	206,980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638	510	128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4. 검 토 의 건

□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092억 원 으로
기정 예산의 1조 2578억 원 보다
4.09%, 514억 원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1조 667억 원 으로
기정 예산의 1조 269억 원 보다
3.88%, 398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는 2425억 원 으로
기정 예산의 2309억 원 보다
5.02%, 116억 원 증액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는 596억 원 으로
기정 예산의 598억 원 보다
0.33%, 2억 원 감액 편성되었고,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1829억 원 으로
기정 예산의 1711억 원 보다
6.90%, 118억 원 증액 편성되었음.

□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사업과 일부 부족한 법적 의무적 경비확보 등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임.

□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 기정예산에서 감액된 세입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변경내시된 국도비의 세입반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성립전 사용된 예산과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신규편성된 예산안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시급성 및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재정의 건정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